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-49호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공시송달 내용
안*언	1994.06.14.	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14번길 14가동 ***호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동 서류를 2024년 4월 23일, 5월 7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(수취인불명)

4. 공고기간: 2024.5.21. ~ 2024.6.4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남양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허재경(☎031-560-19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5. 2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